

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

◇ 제·개정 이유

- 특허협력조약 규칙(Regulations under the PCT) 제16.1(d)에 의거, 세계지식 재산기구(WIPO)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새롭게 조정한 원화 금액의 국제조사료 (호주 특허청)를 알리기 위한 것임
- 우리청이 싱가포르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(2020.7.1.시행)함에 따라, PCT 규칙 제16.1(d)에 의거하여 WIPO에서 정한 국제조사료(싱가포르 특허청)를 알리기 위한 것임
- 라오스 특허청이 우리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(2020.7.1.시행)함에 따라,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에 라오스를 추가하기 위한 것임

◇ 주요내용

- 조사료
 - 호주 특허청: (현행) 1,643,000원 → (개정) 1,757,000원
 - 싱가포르 특허청: (신설) 1,955,000원
-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
 - (현행)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몽고, 스리랑카, 말레이시아, 태국, 멕시코, 페루, 콜롬비아, 캄보디아
 - (개정)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몽고, 스리랑카, 말레이시아, 태국, 멕시코, 페루, 콜롬비아, 캄보디아, 라오스